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422호
- 나. 발 의 자 : 김현아의원외 11인
- 다. 발의일자 : 2015년 4월 1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4월 6일

## 2.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

## 3. 주요내용

- 가.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신설).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과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 안 제9조 제2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안 제9조 제3항), 시장이 시의원, 사회적경제 업무 및 예산담당 과장,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함(안 제9조 제5항)

- 그 외 위원장의 직무(안 제9조 제6항), 위원의 임기(안 제9조 제7항), 해촉사유(안 제9조 제8항), 회의 개최 및 정족수(안 제9조 제9항), 간사(안 제9조 제6항) 등의 규정이 있음.

#### 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 위원회 현황

-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용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희망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1)에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

반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제시가 있음.

## 라. 종합의견

- 행정기구에 대한 설치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므로<sup>2)</sup>,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제시가 있음(다만 자문기관의 설치를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수용해오던 관행이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며, 모든 발의안에서 시·도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안 제9조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

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대법원 2005.08.19. 선고 2005추48 판결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표-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시·도 위원회 관련 규정

<p>유승민의원 발의안</p>	<p>제12조(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시·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신계륜의원 발의안</p>	<p>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 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심의·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지방의회 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p> <p>④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위원: 시·도 부단체장, 관계 부서 실·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li> <li>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역·부문·분야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li> <li>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li> </ul> </li> <li>3. 시·도 의회의 여·야 대표가 추천한 약간명</li> </ol> <p>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p>

	<p>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둔다.</p> <p>⑦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p> <p>⑧ 그 밖의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등의 구성·운영·예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b>박원석 의원 발의안</b></p>	<p><b>제15조(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b>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거나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 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지역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하도록 한다.</p> <p>④ 그 외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p>

-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신설에 대하여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희망경제위원회가 행정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경제진흥본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총망라하는 최고자문기구로 설치된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에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고려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독립된 위원회의 신설도 유의미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참고자료〉

##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 사회적경제분과위 위원 명단

(2015. 1. 1. 기준)

□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 7명

연번	성명	성별	현직	학력 및 주요경력	비고
1	김재현	남	건국대 녹지환경계획과 교수	쓰꾸바대 대학원 농학박사 쓰꾸바대 연구교수 희망제작소 부소장	
2	박성준	남	소셜플랫폼 대표	서울대 졸업 한솔교육 상무 풀뿌리 사회적기업가학교 전문위원	
3	박양숙	여	서울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고려대 대학원 노동법학과석사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	이미영	여	서울사회적기업 협의회 대표	고려대 졸업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이사	
5	이종수	남	사회연대은행 대표	연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진로그룹 상무 희망서울정책자문단 위원	
6	정선희	여	(사)사회적기업지원 네트워크 상임이사	캘리포니아주립대 사회사업학석사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코칭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 위원	
7	박문규	남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금천구 부구청장 인력운영과	당연직

○ 회의 현황

연번	개최일시	대상인원	참석인원	안 건
1	'13.2.4	12명	9명	협동조합활성화계획,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자문
2	'13.3.28	11명	6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장방문
3	'13.7.31	11명	8명	경제비전 수정·보완 방향 및 향후계획
4	'13.8.7	11명	8명	경제비전 보완 및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
5	'13.9.13	11명	9명	경제비전(안) 보강, 사회적경제 현황보고
6	'14.2.14	10명	8명	경제비전(안) 보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보고